第236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2003年2月26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8次本會議)

1.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2.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
3.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代案)
4.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
5.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7.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8.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9.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10. 일본국의「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의제정촉구결의안
11.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

附議된案件

o 위문금갹출의건(의장 제의) …… 2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규택 의원 외 150인 서면동의) …… 2
o 의사진행의건 …… 3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규택 의원 외 150인 서면동의)(계속) …… 15
1.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규택 의원 발의)(이규택 의원 외 150인 발의) …… 16
2.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 …… 18
11.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 20
3.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21
4.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21
5.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전갑길·박상규·김영진·장재식·원유철·김태홍·조성준·김충조·임종석·김경천·문희상·김희선·김옥두·김운용·이병석·권태망·김무성·민봉기·박종희·신경식·이주영·윤경식·정창화·김성조·김기배·이재창 의원 발의) …… 23
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신현태·황승민·유흥수·전용학·하순봉·박희태·강창희·김학송·오세훈·정창화·신경식·최병렬·이승철·이재오·정병국·박창달·임인배·김영환·박세환·김문수·김운용·홍사덕·김용갑·김성호·유재건·엄호성 의원 발의) …… 23
7.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박창달·김성순·이미경·이원형·김경천·오장섭·김화중·황우여·고흥길·이재오·전용학·이승철·조정무·장재식·이규택·전갑길·김문수·김명섭·김태홍·정동채·정세균·정동영·설훈 의원 발의) …… 24
8.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용학·강성구·이우재·원철희·최선영·허태열·정창화·김광원·양정규·박재욱·박희태·이원형·유재건·김효석·권오을·이상득·강인섭·엄호성·박시균·이재오·신영국 의원 발의) …… 25
9.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정부 제출) …… 25

10. 일본국의 「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의제정촉구결의안(여성위원장 제출) ····· 26
o 의사진행의건 ····· 27
o 5분자유발언 ····· 27

o 제16대 대통령취임사 ····· 41

(14시34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번 대구지하철방화참사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로서 우리의 재난방제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치유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

o 위문금갹출의건(의장 제의)

(14시37분)

○議長 朴寬用 그리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3월분 수당액에서 2% 상당액의 위문금을 갹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李揆澤 의원 외 150인 서면동의)

(14시38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李揆澤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마치고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장내소란)

○朴赫圭 議員 한나라당 경기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현대상선이 불법대출한 4000억 원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리에 북한에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등 관련 인사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준적이 없다며 거짓된 위증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지요.)

(장내소란)

○議長 朴寬用 朴 의원, 朴 의원, 朴赫圭 의원! 가만있어 봐요.

아니, 발언을 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발언을 드리겠다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이 받지를 못했어요.

○朴赫圭 議員 그러나 최근 거액의 대북 현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

도 단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강조하고 현대에 책임을 전가하려함으로써 국민적 요구인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尹鐵相 議員 단하에서 － 의장님,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로 했잖아요?)

또한 일련의 대북 비밀송금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됨에 있어서도 사법당국은 수사를 유보함으로써 진실이 은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망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 대북 비밀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2003년 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1항으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한 후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것을 국회의원 150인의 연서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 정권 출범과 동시에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애기할 사람은 손들고 애기해 봐요.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들 좀 진정하십시오.

지금 우리 尹鐵相 부총무께서 오셔서 이 발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주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의사국장도 그 내용을 아는 바가 없고……

(「의사국장! 보고 안 했어!」하는 의원 있음)

(「왜 보고 안 해!」하는 의원 있음)

고함 지를 문제가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尹鐵相 議員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으면 주는 것이 여태껏 해 온 관례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누구한테 신청했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방금 받았습니다.

(○尹鐵相 議員 단상에서 － 신청을 했잖아요.)

나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사국장한테 방금 보고 받았어요.

(○鄭均桓 議員 단상으로 나가며 － 보고 했어, 안 했어!)

(○尹鐵相 議員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으면…….)

발언을 드린다니까요. 의장이 신청도 안 한 발언을 어떻게 줍니까?

(○鄭均桓 議員 단하에서 － 의장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올렸어요?

(「지금 올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鄭均桓 議員 단하에서 － 왜 지금 올려!)

자, 들어가세요.

(○鄭均桓 議員 단하에서 － 의장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鄭 총무, 지금 막 내가 이걸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격을 좀 가져요. 의장이 의사진행 신청을 받고도 안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국장이 지금 처음 들었다고 애기하고 있지 않소!

(○鄭均桓 議員 단하에서 －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

o 의사진행의건

(14시43분)

○議長 朴寬用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李萬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똑똑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 여야가 네 사람씩 하기로 신청을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만약에 이러시면 제가 소상하게 애기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국장이 지금 현재 이 시간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왜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의장에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장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언하십시오.

○李萬燮 議員 전직 국회의장이 발언할 때는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애기가 많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을 할 때 내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 국회의 권위도 높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소신대로 했습니다. 여야 가운데 서서 올바로 국회운영을 했

습니다. 그럼으로써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당으로부터 불신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국회가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니고 오직 국민의 국회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국민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의장을 그만두고 물러서면서 훌륭하신 朴寬用 의장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날치기를 없애고 다수로, 힘의 논리로 미는 국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훌륭하신 朴寬用 의장께서 승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나는 의장직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내가 일순간 내 양심에 호소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여당의 입장도 아니고 야당의 입장도 아니고 오직 전직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또 이 나라 의회를 사랑하는 영원한 의회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인사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룬 것이 국회 관례였습니다. 나는 6대 국회의원부터 오늘날까지 40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인사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에 뚜렷하게 명기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이 관례입니다. 심지어 그 관례를 가지고 국회편람이라는 책자까지 만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당당하게 인사문제를 다루고 그다음 특검제 다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150석이나 되는데, 50석이 여당보다 많은데 왜 당당하게 하지 왜 이러십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여당의 입장도 있고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국회에서 단 며칠간이라도 진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국민여론이 특검해야 되겠다 또 야당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나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왜 협상을 못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총리인준 문제는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혹시 여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만일 물리적으로 막는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합시다. 우리 국회 권위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150석이나 되는 50석이 많은 야당이 이렇게 초조해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친한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다는 사람도 지금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나는 오늘 의사일정을 당당하게 국회법, 국회관례대로 총리인준이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처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특검제법을 다루세요.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내 정치생명을 걸고 국회의원 사표를 여기 써놓고 내가 막아줄 테니까 그리 하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년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150석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작정입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국회의 권위를 높입시다.

나는, 朴寬用 의장도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 국회의 날치기를 없앴고 국회의장 당적을 없앴어요. 朴寬用 의장은 훌륭한 분입니다. 朴寬用 의장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강경한 분들 때문에 본인도 할 수 없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당당히 하고 또 여당도 절대로 몸으로 막는다든가 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제명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높이자 이 말입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왜 여야가 이렇게 모두 당당하지 못하게 강경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친구로서 의회주의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李萬燮 선배의장님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의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신 말씀,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무소속답게,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한나라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이것을 절충하려도 해도 절충이 안 됐습니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관행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자면 따라가는 길 이외에는 의장으로서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법안을 심의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한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행을 존중하겠습니다. 李萬燮 전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는 그런 정신으로 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호의 양심의 가책 없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尹景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景湜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의 尹景湜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소신있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늘 존경하던 李萬燮 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막 바로 다소 반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사심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제16대 盧武鉉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듬뿍 받도록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총리임명동의안을 특검법과 연계를 한다느니 또 나아가서는 실력저지를 하겠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새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총리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연계라는 말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입장에 절대 있지를 않고 또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차례 대표최고위원님과 또 원내총무께서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특검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원래 金大中 정권 임기 내에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이라도 처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특검제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타협을 할 건 하고 합의를 할 건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두 번째, 발목잡기라는 말도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오히려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새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당이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민주당과 새 정부로서는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셋째, 민주당은 여러 차례 특검제 법안을 실력저지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검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일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하게 되면 국회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 원내 과반수 의석을 넘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수수방관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정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의 실력저지를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도록 방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공히 진통을 겪으면서 현재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는 바람에 민주당이 실력저지까지 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고육지책을 쓰는 바람에 오히려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하려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민주당과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 의사진행발언이 민주당에서 열 분, 한나라당에서 여덟 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 다 드리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너무 야유를 보내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金景梓 議員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건 다 하실 수 있는 압도적인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정 50년사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건, 물론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국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특별검사에게 돌려버리자면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왜 세비를 받습니까?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발언하는 의원들의 내용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중요한 것, 다루기 어려운 것은 전부 검찰로 돌려버리면 대한민국에는 검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왜 필요해요? 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짓을 하십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배임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洪準杓 의원, 맞지요?

(○洪準杓 議員 의석에서 － 작년 10월부터 다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라도……

저는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부터 대북접근에 있어서 더 이상 비밀주의를 청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한 바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라호텔에서 폰 바이제커 전 독일 대통령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동독과 서독이 브란트의 사회민주당이 오스트폴리틱(동방정책)을 할 때 바이제커 의원은 당시 야당인 기독교민주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여야가 대화해서 타협을 하고 했다, 그래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서 동방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중요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도 인정합니다. 귀 당에 있는 이모 아무개 의원도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도 특검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우리가 따져봐서 국민들이 진짜로 특검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사 국민들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특검을 하시겠다면 그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적인 졸속주의에 빠져서 특검을 강행하면 정치적인 파급효과와 부담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악담이 아니올시다.

모든 것을 검찰이나 특검에 다 돌려버리면 진짜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요, 아니면 특검공화국이요,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나 별로 준비가 되지 않고 해서 그냥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라고 나 손들고 왔소.' 이것이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 자리에 올라오셨던 전 국회의장 李萬燮 의원님이 국회의장을 하시고 계실 때는 '저 양반이 우리 당 소속인가!' 하고 의심할 만큼 너무 야박하고 중립적으로 해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과연 잘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계시는 朴寬用 의장님을 제가 한 40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소속이 무소속인데 아직도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가! 지금 의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朴寬用 의장께서는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검제를 잠시 제쳐두고 高建 총리 후보 인준안을 먼저 상정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수고했습니다. 친할수록 인사는 하고 지냅시다.

의장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한나라당같이 보이고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민주당처럼 보입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李柱榮 議員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없는 영역에서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발동할 때 무슨 관행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형태로 처리를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합의를 해 주면 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서 처리를 하겠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국회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국회의 다수결원리를 부정하는 소수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왜 특검법 처리를 앞에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십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면 설사 모르지요. 그것은 순서를 바꾸어 드려야 되겠지요.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정기국회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11월에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때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셨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니들 거짓말 참 번지르르 하게 잘 꾸며서 잘 한다."고 얼마나 저희들을 매도했어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고 특검으로 가더라도 우리 국회에서의 진상규명은 그대로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진상규명은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익, 국익하시고 또 남북관계 훼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金大中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해명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다 해소해 줬다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미묘함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내막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너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제 대북 뒷거래로 들어간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 뒷돈으로 간 돈들이 이런 데 쓰여진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규명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책의 위법성을 국회에서 밝혀내고 또 해야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회에서의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수단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난날에 보셨지 않습니까, 정쟁의 연속입니다.

계속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집행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분명 국익 개념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국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사일정변경동의를 국회법대로 하는 데 민주당 의원들도 협조하셔서 이 역사적 소명 앞에 우리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의 참 모습을 보여 주는 데 함께 앞장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基善 議員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법이 존재하

는 것도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순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자고 강행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순간 국민의 다수 의견은 어제 盧武鉉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국정을 새롭게 바로잡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잘해 보시겠다고 출발하는 마당에 盧武鉉 대통령에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지켜볼 것은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비판하십시오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뜻이고 또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처리함에 있어서 원래의 여야합의대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 주실 것을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해 올리고 또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순리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특검제에 의해 대북송금 문제를 밝히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진상규명을 함에 있어서 특검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차례 특검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제는 대단히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매일 이것을 중계방송하듯이 공개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남북관계에 아주 중요한 대북송금 문제는 그렇게 매일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공개해도 좋을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모처럼 다시 발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훼손되거나 경제가 다시 망해 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대북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은 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할 만한 국내정세를 앞두고 특별검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서 혹시라도 이러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사려 깊게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따져서 공개할 만한 것은 공개하고 또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정보는 보호하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이고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도 바로 이러한 사려 깊은 진상규명 과정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여야 총무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먼저 盧武鉉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빨리 국회에서 국무총리 동의해 주시면 바로 그 국무총리와 상의해서 국무위원을 빨리 임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경제와 안보에 관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힘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 문제를 잘못 풀어 가지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깨지고 혹시라도 진전된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국민의 걱정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여야 총무님께서 이 문제를 잘 상의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한나라당에서의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자가 남은 사람들은 발언을 취소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丁世均 議員 민주당의 丁世均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 의사일정이라고 인쇄된 일정표가 한 부씩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의사일

정표는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국회 의사국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1월 말에 尹鐵相 수석 부총무와 林仁培 수석 부총무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 정식 결재 과정을 거쳐서 의장께서도 이렇게 의사일정을 하도록 허가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화급하게 바꾸어야 될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이 의사일정을 이대로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여야 간에 합의해서 확정한 의사일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소수였으면 이렇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겠습니까? 다수의 횡포를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의회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우리가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로 이 신성한 의사당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직무가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국회법대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는 국회법뿐만 아니라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국회를 운영해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법보다도 이 확립된 관행이 존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관행 중의 하나가 李萬燮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관행이 확립되었겠습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재선에 불과합니다마는 다선 의원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왜 이런 관행이 세워졌습니까?"라고 여쭈어 보니까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토론 없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를 우리가 임명동의해야 되는 이 마당에 특검법이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한 문제를 앞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인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립된 관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리민복은 뒤로 두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립된 국회의 관행을 존중하도록 국회를 지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왜 다선의 존경받는 분을 국회의장으로 모시겠습니까? 초선, 재선이 하지요. 국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다선의 존경받는 의원님을 의장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국회를 지도해서 이렇게 확립된 관행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선이라고 해서 국회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법의 정신은 국회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世均 議員 단하에서 － 의장님, 지금 토론하시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원만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다음은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丁世均 議員 단하에서 － 의장님, 발언했는데 그렇게 토론하시면 저한테 반론권을 또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이 뭘 잘못했다고 그

러는 거예요?

沈載權 의원 발언하십시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자 합니다.

○沈載權 議員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출신 沈載權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물론 의사일정이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행이 얼마나 옳았던지 또 한나라당에서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임 의장으로 모셨던 李萬燮 의장님이 해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수입니다, 절대다수입니다.

또 심지어 李萬燮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그런 것이 나올 때 당신이 몸으로라도 막으시겠다, 왜 이럽니까? 정말 지난 50년간 훌륭히 세운 관행을 왜 이렇게 바꿉니까? 마치 특검법 그렇게 해서 먼저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뭔가 정치에서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 문제만은 순리대로 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롭게 새 대통령 출범과 더불어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 국회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면서 나온 김에 저는 이 문제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저는요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입니까? 이런 말씀 나왔을 때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정부가 그렇게 돈을 몰래 보냈을 리 없다'라고 보면서 그러나 만에 하나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 큰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엊그제 육로관광으로 우리 이산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權琪述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우리 동료 의원들 이야기에 이러지 마십시다.

저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받은 시간 내에서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50년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편지 한 장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넘어가도 우리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무장지대 넘어서 이렇게 육로로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번에 우리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IAEA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에서 북한 핵문제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입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역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북핵 문제 풀어 나갈 지렛대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어떤 분들 연평해전, 서해교전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안보가 취약해졌다 또는 남북관계가 열악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평화정책이 그만큼 남북관계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바로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관계자들 불러서 이야기 듣지요. 만약에 그래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잘못이 있다면 사법적 문제 논의하십시다.

저는 이번 의안 처리가 당연히 관행대로, 전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인준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특검제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여야 대표자들, 총무단 머리 맞대고 의논하십시다. 그래서 진상 밝혀도 좋을 만큼, 우리 국익에 어긋나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머지 법적 절차 의논하십시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열 분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

이 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의사진행발언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계속 용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동안에 다섯 분이 발언하셨고 또 열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운영을 법대로 해야지 의장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은 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金敬天 의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봐야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발언하십시오.

○金敬天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朴寬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당한 영령들에게 삼가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행불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속적인 햇볕정책을 펴왔던 金大中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든 盧武鉉 참여의 정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북송금, 특검제를 비롯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우리의 미래가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을 폄하하고 시비로 일관하고 있는 오늘을 대하면서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은 21세기 국운 융성의 기운을 맘껏 표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3년이나 앞당겨 극복했고 97년 말 40억 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말 1183억 불로 세계 4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 50년 동안의 무역수지 누계적자를 불과 지난 5년 동안에 모두 상쇄하고 흑자로 반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600억 불을 유치해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고 월드컵 4강 신화와 남북 화해 무드의 아시안게임으로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대북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유지야말로 국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동북아 중심국가와 세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에 대해서 특검제를 고집하는 한나라당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면서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제를 통해 대북 송금문제를 파헤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론 분열과 남북 화해 기초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한 도올의 말처럼 말초적인 흠집내기와 까발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몇 장의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도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의 평화,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입니다.

특검제 실시를 그동안 여야 합의로 실시했던 관행을 깨고 다수당의 힘에 의해 실시한다면 한나라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끊어진 남북관계의 다리를 잇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 다리에 상처를 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권과 평화의 사도 金大中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이어 새로 취임한 盧武鉉 대통령께서 천명한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평화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치기

준입니다. 그러기에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단절은 있을 수 없으며 근시안적인 정쟁의 희생물로 저당 잡힐 수도 없습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상생의 정치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이 때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南宮晳 의원, 꼭 발언하셔야 되겠어요?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南宮晳 議員 단하에서 － 제 말을 들어 보세요.)

南宮晳 의원, 빨리 발언하십시오.

○南宮晳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친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64년입니다. 남북전쟁이 붙었습니다. 미국입니다. 앨링턴 지역에서 남부 병사가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묻었습니다. 다음 번 전투에서 북군 병사 2700명이 죽었습니다. 링컨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이 묻어라."…… 1870년까지 남·북군 양쪽에서 죽은 병사들 1만 5000구를 끌어다 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북전쟁을 하고도 하나의 국가가 되고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때 우리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 80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인민군과 중공군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250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인명 피해 530만 명, 1000만의 이산가족 그리고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50년 전에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양측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해서 다시 한 번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만은 막아보자, 어떻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난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법과 우리들의 관행과 사회적인 합의를 전체적으로 얻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했습니다.

이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좀더 알아보고 범법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법으로 넘겨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이 이번에 이것을 총리 인준 전에 처리하자 하는 것은 다분히 정쟁의 기미가 보입니다. 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너무 싸움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도 전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새 정부이니 총리 인준을 먼저 해 주자 그리고 이의가 있으니 특검법을 다듬어 보자, 기간도 좀 단축해 보고 범위도 해 보자고 해서 여러분들 150명이 처리를 못합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총리 인준을 뒤로 돌리면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이것을 먼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저는 그렇습니다……

발언하는 데 가만히 계세요.

만일에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을 해 주고 비실비실 밀리는 척하면서 열흘 뒤에 특검법을 통과해서 싸움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그 다음 번에는 한나라당의 편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질 것입니다. 나는 안 싸울 것입니다.

(○李秉錫 議員 의석에서 －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민주당 얘기나 해요.)

남의 당에 대해서 얘기할 계제이니까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밖에서 밀려오는 바람을 모르고 정쟁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팀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총리 인준을 시키고 특검법을 다시 협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국민이 동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宋永吉 의원이 발언할 차례인데요, 宋永吉 의원이 열 번째 발언을 하면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宋永吉 의원 발언하십시오.

○宋永吉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宋永吉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무총리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특검제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의 순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통용되려면 충분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최소한의 절차상,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여야가 꼭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특검법이나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도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하는 이유는 다수결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다수결이 통용되는 근본적인 틀조차도 다수가 임의로 유리한 시기에 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임명절차에 관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이유는 丁世均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우리 국가의 행정부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회에게 위임해 놓은 중요한 임명동의권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안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국익 우선을 위한다는 국회의원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에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문제는 다른 사안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앞으로의 5년간 이 내각을 이끌어 나갈 총리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순수한 판단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혁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유투표, 모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위임된 상태에서의 다수결이어야만이 그 다수결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다수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이번 국회 막 들어와서 원내 교섭단체의 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자는 자민련 측과 저희 민주당 측의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교섭단체의 수를 줄이는 안 자체를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몸으로 막았고 그것이 관철되니까 날치기라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섭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것은 물론 자민련 때문에 爲人設法이다, 이러한 모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유신독재가 교섭단체의 벽을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뭔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진보적인 법이었습니다.

나는 이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도 못하게 소수의 물리로 막았던 그러한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다수결의 원리 자체는 소수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 절차상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진상을 규명해야 될 민족적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명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입니다만 일제 통치하에 강제 동원돼서 피해를 봤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년 동안 민족을 배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조사에 관한 법조차도 아직 아예 통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이 특검제를 바라보는 데 여야 간에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안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수결의 견해가 국민의 전체 의사와 상치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내각

책임제에서는 수상의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렇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일방적인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낡은 정치를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당한 헌법적 권한, 더구나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여야의 정쟁과 상관없이 국가의 영속성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될 임무로 우리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각 정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결부시켜서 하는 낡은 정치는 끝장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상정하느냐 마느냐가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자체를 다수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국회를 대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어떻게 소수가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 관행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줘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薛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 朴寬用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薛勳 議員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전연 다른 내용입니다.)

심의할 안건을 이렇게 많이 앞에 두고……

(○薛勳 議員 의석에서 － 들어 보십시오. 몇 사람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신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국회가 소란스러운 모습이 보기가 좋겠습니까?

(○薛勳 議員 의석에서 － 조용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소란스럽습니까? 발언권 주세요.)

薛勳 의원께서 마지막이라면 발언 드릴 수 있습니다.

(○薛勳 議員 단하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말고 있습니다.)

발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좀 계셔 보세요.

薛勳 의원께 발언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양해하십시오.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薛勳 議員 단하에서 － 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 못하겠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 신청해 놓고 또 신청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실 것입니까?

(「한 달 내내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여러분들 말씀대로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열한 분이면 충분하게 개진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薛勳 의원, 마지막으로 발언하십시오.

○薛勳 議員 저는 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 허용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진행하고 있는 의사진행 절차는 상식에 반합니다. 우선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년간 지켜 온 인사문제는 다른 의안에 앞서서 처리한다는 우리 국회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앞으로 존중되어야 할 그런 의사진행 방법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의사진행표에 무엇보다도 총리동의안이 먼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야당이 뒤집어 가지고 특검법을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는 지금 정부, 盧武鉉 정부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일단 취임하면 각료를 인선해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게 해야 야당이 비판을 하든 공격을 하든 일의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특검법부터 만들겠

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설혹 특검법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일단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서에 맞는 상식입니다.

40년 관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맞지 않는 일을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느냐, 제가 남의 당 얘기를 해서 대단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 지휘부가 있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李會昌 총재가 계셨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할 것 없다, 천천히 하자, 이런 합리적인 처방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지금 야당에 지휘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모두가 강경파가 되어서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맞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朴寬用 의장께서, 朴寬用 의장은 어쨌든 과거에 야당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발휘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에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150명 의원을 믿고 순서대로 총리 동의안 통과시켜 주고 일단 진행시키고 그리고 특검제로 가자, 그러더라도 특검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의장께서 같이 동조해 버리면 결국 한나라당 망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의장님께서 잘못되어 가는 의사진행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검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식 있는 다수의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앞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국민들이, 특검제를 하자는 국민들보다 특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야당 의원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조용히 좀 하십시오.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마다 자꾸 의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관행에 따라, 의사일정에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준다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任鍾晳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의원 개개인이 할 말씀이 있어서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의사진행을 하자는 것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국회 운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심에 호소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쪽의 주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 여야 총무가 만나되 이것은 그냥 만나서 시간만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문제를 타협하기 위해 수없이 절충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30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30분 동안 각 교섭단체 간에 결말을 내어 오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당에, 민주당에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규택 의원 외 150인

서면동의)(계속)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이미 제안설명을 한 바 있는 그 안건은 국회법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57인 중에 찬성 154표, 반대 없습니다. 기권 3인으로서 李揆澤 의원 외 150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규택 의원 발의)(이규택 의원 외 150인 발의)

(16시4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金容鈞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국회의 동의와 여야 협의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적법하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는 국가의 중요 산업 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천문학적 거액인 현금과 회사를 위해서 써야 할 자금을 대북 비밀 뒷거래에 사용했으며 정부관련 부처는 기업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 감독과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여 대북 비밀송금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불안을 야기한 바 있으며 더욱이 대북 비밀지원금은 북한군의 군비 증강 등에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정부는 그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 국가의 발전과 진정한 남북통일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처벌을 통해서 국정을 바로잡고 장래를 엄계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이 법안이 기존 2건의 특별검사법의 규정·체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특별검사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현대상선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산업자금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에 사용하였다는 의혹사건과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 5000만 달러를 대북 비밀 송금한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 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특별검사가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수사기간을 1차로 60일, 2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85조 및 제 7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축조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林仁培 의원 등 3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培 議員 경북 김천 출신 林仁培 의원입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 내용 일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안의 명칭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하고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 제2조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비리 및 추가로 발견된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추가로 발견된 사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사 준비기간을 처음에는 180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총 12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임인배·박원홍·이인기·고흥길·서병수·이원형·이원창·이완구·김윤식·권태망·이주영·권철현·남경필·이상득·최병렬·도종이·박창달·이승철·손희정·윤경식·김병호·전재희·이방호·강성구·허태열·조웅규·정갑윤·전용학·이병석·박혁규·윤두환·김용학·박종희·김정부·민봉기·윤여준·김황식 의원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1항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林仁培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林仁培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한쪽 의석이 비워진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안을 절충하느라고 노력한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각 정파는 각기 자기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면서 국회

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할 의원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연락을 드려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林仁培 간사, 어디 계십니까?

위원장을 만나서 심사보고할 사람을 빨리 결정해 오십시오.

2.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

(19시11분)

○議長 朴寬用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高建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국무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왔고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동의해 온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한 高建의 재산신고 사항 및 경력사항은 오늘 배부한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高建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인사청문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후보자 高建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金忠兆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候補者(高建)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長 金忠兆 일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에 이 본회의가 개의되면서 개의 벽두에 이 보고의 순서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나 천연된 뒤에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金忠兆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후보자 高建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구성되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한나라당 소속 吳世勳 의원, 元喜龍 의원, 尹景湜 의원, 李方鎬 의원, 李仁基 의원, 林仁培 의원, 全在姬 의원 등 7인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姜雲太 의원, 李鍾杰 의원, 李浩雄 의원, 鄭長善 의원과 본 의원 등 5인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宋光浩 의원 등 모두 13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로는 한나라당 林仁培 의원, 새천년민주당 姜雲太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총리후보자 高建 인사청문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실시된 몇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함께 국정 전반을 원활히 통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인사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의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한미 외교현안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 새 정부가 시급히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국정과제가 가로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 또한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함으로써 행정 각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高建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부부처간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북한의 핵 위기 및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개혁, 공적자금 관리 및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새만금 간척사업, 노사관계의 안정 등 환경·노동·사회·복지 현안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으로 대두된 지하철 안전을 비롯한 재난관리대책 등 국정 현안 제반사항에 걸쳐 총리후보자의

식견과 소신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10·26 당시의 행적, 5·17 당시의 사표 제출 여부,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시국관, 수서택지 특혜분양 등 서울시장 재직 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본인과 차남의 병역 기피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17인의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간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청문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도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을 추궁하는 측면보다는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수행능력과 후보자의 가치관 그리고 소신 파악에 보다 중점을 둠으로써 한 차원 높은 인사청문회의 선례를 남겼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차분하고 엄정하면서도 품위를 지키고자 노력한 청문회로서 우리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평가도 바로 국민적 여망과 부합되는 것이었다고 사료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충실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부측의 답변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대부분 확보함으로써 일부 해당기관의 답변 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관행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중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사전에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또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에 있어서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증인출석요구서에 첨부되는 증인신문요지서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인의 답변서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충실하고 치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범적인 청문회 운영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감히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청문회 운영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등에관한법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정의견을 경과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청문회 기간 중에 각당 총무단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려 마지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20일과 21일 이 두 날은 마침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던 관계로 이틀간의 청문회 회의장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숙연한 추모의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사실도 덧붙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무총리후보자(고건)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金忠兆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金榮春 의원, 金鶴松 의원, 都鍾伊 의원, 閔鳳基 의원, 全甲吉 의원, 李美卿 의원, 李在禎 의원, 李鍾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

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9시22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議長 朴寬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9시3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4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163표, 부 81표, 무효 2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9시4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장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災害對策特別委員長 金泳鎭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金泳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상을 초월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함께 대구를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샅샅이 살피고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로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저와 간사 위원 그리고 朴宗雨 행자위원장과 함께 朴寬用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대구시민회관 합동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사고현장은 그야말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방문단은 의장님과 함께 국회로서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가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3년 2월 25일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래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반면에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산업화·도시화·정보화가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른바 '위험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하철·백화점·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시설의 증가로 우리들의 생활공간이 각종 재해·재난의 위험에 이전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되어 있고 국민의 안전불감증 또한 심각한 상태이므로 사태 발생 시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재난 관리능력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구포 열차 전복, 위도 유람선 침몰, 목포 여객기 추락, 94년 충주 유람선 대형 화재,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귀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태풍 경보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비롯하여 폭설, 가뭄, 황사 그리고 2000년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사고 등 각종 재해는 그 규모와 범위가 날로 급격히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는 수해

지역 전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을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저와 한나라당 李在昌 의원, 자민련 元喆喜 의원이 지난 1월 19일부터 10일간 일본, 호주, 미국 등 재해·재난관리 선진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국방을 군사방위와 민방위로 구분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인명·재산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민방위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에 연방재난관리청을 국토안보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날로 대형화되는 재해와 재난 관리에 대폭적인 예산편성과 전문인력 확보,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에 요구하는 우리 국회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적 종합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출범한 새 정부는 현 방재시스템을 조속히 혁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재해·재난의 예방·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총체적인 방재대책에 대한 정부종합보고서를 2003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3. 국회는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심의 시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시4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崔龍圭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崔龍圭 법제사법위원회 崔龍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金學元 의원, 崔鉛熙 의원, 千正培 의원, 李柱榮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4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003년 2월 19일 제236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행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 구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종래 헌법재판소의 운영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의 미비와 법의 해석 및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을 개정하여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정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이 타 국가기관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점이 있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연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함과 동시에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하게 하면서 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소원제도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개인 간의 쟁송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 청구기간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보다도 짧아 국민의 기본권 구제나 헌법질서의 유지와 보장에 미흡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경우는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법이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무자력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무자력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함으로써 헌법소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반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하여 국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둘째, 법원, 검찰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며 셋째, 법무사의 등록 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등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의 등록 거부사유를 도입하고 법무사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사 업무 범위를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교적 법률적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무사들에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경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무사에게 업무영역을 넓혀 주더라도 여전히 경매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0조의2 '출석의무'를 신설하여 법무사가 경매 또는 공매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경매·공매장소에 출석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代案)

(법제사법위원장)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찬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金東旭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金東旭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0, 반대 3, 기권 8인으로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전갑길·박상규·김영진·장재식·원유철·김태홍·조성준·김충조·임종석·김경천·문희상·김희선·김옥두·김운용·이병석·권태망·김무성·민봉기·박종희·신경식·이주영·윤경식·정창화·김성조·김기배·이재창 의원 발의)

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신현태·황승민·유흥수·전용학·하순봉·박희태·강창희·김학송·오세훈·정창화·신경식·최병렬·이승철·이재오·정병국·박창달·임인배·김영환·박세환·김문수·김운용·홍사덕·김용갑·김성호·유재건·엄호성 의원 발의)

(20시0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全甲吉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2001년부터 공무원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짐에 따라서 동일 직급 재직연수의 공무원이라 하여도 퇴직 시기에 따라서 연금수급 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기면서 연금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2% 차이 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군인연금법의 내용과 같이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직급 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 시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밖에 군인연금법의 체계와 일치시키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孟亨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어 2002년 12월 31일자로 시효 소멸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청구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 등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교부나 자동차 검사 시에 납부하는 분담금이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의 제·개정에 따라서 2002년부터 분담금 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 도로교통법 부칙에 의하면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전체 환급금의 64%인 814억 원이 환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朴憲基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朴憲基 議員 의석에서 － 투표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박창달·김성순·이미경·이원형·김경천·오장섭·김화중·황우여·고흥길·이재오·전용학·이승철·조정무·장재식·이규택·전갑길·김문수·김명섭·김태홍·정동채·정세균·정동영·설훈 의원 발의)

(20시0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長代理 玄勝一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회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인 급여액 등에 관한 준용법인 방금 가결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 발생 시의 보전조치와 연금액 조정시기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용학·강성구·이우재·원철희·최선영·허태열·정창화·김광원·양정규·박재욱·박희태·이원형·유재건·김효석·권오을·이상득·강인섭·엄호성·박시균·이재오·신영국 의원 발의)

9.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정부 제출)

(20시1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항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仁基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 중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가 염분의 농도 등에 문제가 있어 토양 오염 및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비료생산업자의 범위에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까지 포함시켜 비료의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비료 중 염분이 없는 축분비료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 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그 보험급여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서는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의 대상은 선체·기관 및 의장품을 일괄단위로 하며 가입금액은 대상어선의 잔존가액의 일정비율로 하였습니다.

넷째, 재해를 당한 어선원의 용이한 재활과 치료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지정병원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요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만장일치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일본국의「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의제정촉구결의안(여성위원장 제출)

(20시16분)

○議長 朴寬用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국의「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 林鎭出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女性委員長 林鎭出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林鎭出 위원장입니다.

일본국의「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3년 2월 17일 제236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위원회에서 孫希妊 의원, 趙培淑 의원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기간 동안 일본이 최대 2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까지 국제적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65년의 한일 간의 조약은 정부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UN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나 그 어떤 쌍무적 조약들도 성노예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요구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책임 및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협정으로 책임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군위안부여성에 대한 사죄 및 법적 배상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3년 1월 31일 일본국의 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현재 일본국 의회 참의원에 계류중에 있는바, 이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한일 양국의 과거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의회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자료의 공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배상 등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직·운영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국제법상의 비인도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진실을 교과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일본 후세들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아시아 국민들과 진정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일본국의「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제정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 기권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록을 宋光浩 의원과 金文洙 의원은 투표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분 찬성이지요? 기록에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국의「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제정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의사진행의건

(20시22분)

○議長 朴寬用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李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協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李協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의 벽두에 대북 송금과 관련한 특검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안에 관해서 합의된 의사일정을 제쳐 두고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따른 물의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의 내용에 관해서도 국민 내부에 찬반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너무 서둘러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순리와 합리성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서로 논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원만한 의사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은 국회의 최고 지도자인 의장님께서도 이 논쟁에 열을 올리고 참여하심으로써 사회자로서의 본분을 잠시 잊었다는 지적을 유감스럽지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회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의회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반세기 동안 이어온 우리 국회가 자랑스러운 민주적인 전통과 인사문제를 그 어느 안건보다도 우선해서 다룬다는 선례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의사일정을 미리 합의해 두었음에도 이것이 훼손당하는 것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염원인 민주주의와 의회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의사가 순조롭지 못했고 또 그 순조롭지 못한 과정에 의장님마저 그러한 소란에 참여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의를 마치면서 의장께서 적어도 우리 여야 모두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인사로나마 사과의 말씀 한 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의 그러한 뜻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 부탁컨대 우리 모두가 원만한 국회운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사를 갖추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오늘 회의 도중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으로, 제가 개입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 부족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5분자유발언

(20시28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白承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議員 대구 중구 출신 白承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대구지하철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절규하

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통곡과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기에 DNA검사를 통한 신원확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한 점의 의혹도,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대구지하철참사는 정부의 대형재난 대처 능력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자초한 인재입니다. 그간 정부는 예산타령만 일삼으면서 오로지 지하철의 건설과 소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확보는 뒷전에 두었습니다.

재난방지 및 기획관리시스템의 미흡함은 물론 도시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기준인 내장재 내화기준, 발화 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기준, 재질기준, 시험기준 등 세부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긴급장비, 대피장치, 사전정보시스템, 비상시 유도등 작동장치 등 기초 안전장치마저 내팽개쳤습니다. 따라서 대구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사망자의 신원확인, 시신수습 등 사후처리를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형 참사를 당하고도 사태수습을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번 참사와 사태수습에 연관된 주무장관과 책임자들은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태수습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안전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를 망라한 혁명적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입찰에 최저가제를 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은 무시한 채 인화물질로 가득 찬 전동차의 구입과 운행이 계속됐으며 이 같은 결과가 결국 오늘날의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차량의 내·외장재를 난연·불연재로 교체함은 물론 안전시설의 완벽한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풍시설 역시 과학적으로 설계된 설비로 교체해야 하며 대피시설은 물론 비상탈출구의 조명시설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제는 단 1명의 희생자도 없는 안전시설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제 또다시 화마에 휩싸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대구지하철의 운행여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대구지하철의 내장재를 난연성으로 교체하는 데는 6~7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전동차 내장재의 교체 및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지방 지하철 도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안전을 돌볼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산교통공단과 똑같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에도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참 조)

【결의안】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
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3. 2. 25.

제 안 자 :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주 문

국회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종합안전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출범한 신정부는 현행 방재시스템을 조속히 혁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재해·재난의 예방·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총체적인 방재대책에 대한 정부종합보고서를 2003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3. 국회는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심의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안이유

근래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은 '삶의 질'을 고양시켰지만,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산업화·도시화·정보화가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른바 '위험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음.

더구나 도시화·산업화는 지하철·백화점·도시가스 등에서처럼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생활공간이 각종 재해·재난의 위험에 이전보다 훨씬 취약하게 되어 있고, 국민의 안전불감증 또한 심각한 상태이므로 사태발생시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재난관리능력은 국정운영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임.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구포 열차전복, 위도 유람선 침몰, 목포 여객기 추락, 1994 충주 유람선 화재,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수많은 귀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매년 발생하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비롯하여 폭설·가뭄·황사 그리고 2000년 동해안지역의 대형 산불사고 등 각종 재해는 그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작년에 발생한 태풍「루사」의 피해는 수해지역 전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을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급기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2월 18일의 대구 지하철 대참사에 이르게 되었음.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국방(National Defence) 이외의 국민의 생활안정과 인명·재산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민방위(Civil Defence)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 연방재난관리청을 국토안보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시스템 관련 기능이 8개 부처 등에 분산되어 있고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이 구분 관리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는 등 현행 시스템을 변화된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금번 출범한 신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잉태되어온 '위험'의 요인을 면밀히 살펴서 조속히 선진방재시스템을 구축, '위험사회'가 아닌 '안전사회'를 정착시킴으로써 국가적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임.

일본국의「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 促進에관한法律」의제정촉구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3. 2. .

제 안 자 : 여성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인간이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이 고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최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 어린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동원 혹은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는 1996년과 1998년 UN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에 공감하면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한「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案」이 일본국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2003년 1월 제출되었는 바, 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0여 년이 지나 고령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대부분이 명예회복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조속한 시행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회복,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의회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자료의 공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배상 등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직·운영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는 국제법상의 비인도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 진실을 교과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일본 후세들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아시아 국민들과 진정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15일의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가 고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민족·국적·정치적 견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학대하였으며, 특히 최대 2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나이어린 조선인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제동원하여 전쟁 중인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제법률가위원회가 199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965년의 한·일간의 조약은 정부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1996년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나 그 어떤 쌍무적 조약들도 성노예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요구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1998년 8월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책임 및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협정으로 책임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군위안부여성에 대한 사죄 및 법적 배상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시점에서 2003년 1월 31일 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案」을 공동발의하여 현재 일본국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바, 이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한·일양국의 과거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투표의원(157人)

찬성의원(154人)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성	강 창 희	고 흥 길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광 원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룡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일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황 식	나 오 연
남 경 필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민 봉 기	박 근 혜	박 명 환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종 근	박 종 웅	박 종 희	박 주 천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청 원	손 희 정	송 광 호	신 경 식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대 륜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세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헌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진석 정창화 정형근
조부영 조웅규 조정무 조희욱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한승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3人)

김영춘 김홍신 박관용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林仁培 의원 등 37인 발의)

투표의원(162人)

찬성의원(158人)

강삼재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영선 김영일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근혜 박명환
박상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웅
박종희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형근
조부영 조웅규 조정무 조희욱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한승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1人)

김부겸

기권의원(3人)

김영춘 김홍신 박관용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

투표의원(182人)

찬성의원(182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배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승수
함석재 함승희 현경대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75人)

찬성의원(173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원길
김윤식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함석재 현경대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반대의원(2人)

김정부 김황식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1人)

찬성의원(160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원길 김윤식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전갑길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함석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반대의원(3人)

김정부 김황식 조배숙

기권의원(8人)

김영일 박혁규 원희룡 이상배
전용학 천정배 추미애 현경대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2人)

찬성의원(170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안경률 안대륜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함석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기권의원(2人)

김병호 심재철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3人)

찬성의원(173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일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7人)

찬성의원(165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안경률 안대륜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기권의원(2人)

심재철 추미애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2人)
찬성의원(162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동채	정병국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투표의원(161人)
찬성의원(158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용갑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용원	전재희
정대철	정동채	정병국	정세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기권의원(3人)

이재정	임인배	전용학

○일본국의「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 관한法律」의제정촉구결의안

투표의원(163人)

찬성의원(163人)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문수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화중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정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대철 정동채 정병국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조배숙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현승일 홍재형 황우여

○出席議員(265人)

康奉均 姜三載 姜成求 姜淑子
姜申星一 姜雲太 姜仁燮 姜在涉
姜昌成 姜昌熙 高珍富 高興吉
權琪述 權寧世 權五乙 權哲賢
權泰望 金景梓 金敬天 金光元
金槿泰 金杞培 金杞載 金淇春
金德圭 金德龍 金德培 金東旭
金樂冀 金滿堤 金明燮 金武星
金文洙 金秉浩 金富謙 金相賢
金聖順 金晟祚 金成鎬 金令培
金映宣 金榮馴 金泳鎭 金榮春
金榮煥 金玉斗 金容甲 金容鈞
金龍學 金龍煥 金雲龍 金元基
金元吉 金元雄 金允式 金一潤
金政夫 金貞淑 金鍾泌 金鍾河
金宗鎬 金鎭載 金燦于 金忠兆
金台植 金泰弘 金宅起 金鶴松
金學元 金炯旿 金洪信 金弘一
金花中 金晃植 金孝錫 金希宣
羅午淵 南景弼 南宮 晳 都鍾伊
柳在乾 柳在珪 柳漢烈 柳興洙
孟亨奎 睦堯相 文錫鎬 閔鳳基
朴寬用 朴槿惠 朴明煥 朴炳錫
朴炳潤 朴尙奎 朴相千 朴相熙
朴世煥 朴承國 朴是均 朴洋洙
朴源弘 朴仁相 朴在旭 朴鍾根
朴宗雨 朴鍾雄 朴鍾熙 朴柱宣
朴柱千 朴 振 朴昌達 朴憲基
朴赫圭 朴熹太 裵基善 裵奇雲
白承弘 徐秉洙 徐相燮 徐廷和
徐淸源 俟松雄 薛 勳 孫希妊
宋光浩 宋錫贊 宋永吉 宋榮珍
宋勳錫 辛卿植 申溪輪 辛基南
申榮國 申榮均 申鉉泰 沈揆喆
沈載權 沈在哲 安炅律 安大崙
安東善 安商守 安泳根 安澤秀
梁正圭 嚴虎聲 吳世勳 吳長燮
元裕哲 元喆喜 元喜龍 劉容泰
尹景湜 尹斗煥 尹汝雋 尹榮卓
尹鐵相 尹漢道 李康斗 李康來
李敬在 李揆澤 李根鎭 李洛淵
李萬燮 李美卿 李方鎬 李秉錫
李富榮 李相得 李相培 李相洙

李祥羲 李性憲 李承哲 李良熙
李嬿淑 李完九 李龍三 李佑宰
李元昌 李源炯 李允盛 李允洙
李仁基 李仁濟 李在善 李在五
李在禎 李在昌 李正一 李鍾杰
李柱榮 李昌馥 李漢久 李海龜
李海鳳 李海瓚 李 協 李浩雄
李訓平 李熙圭 林仁培 任鍾晳
林鎭出 任太熙 張光根 張誠源
張永達 張在植 張泰玩 全甲吉
田瑢源 田溶鶴 全在姬 鄭甲潤
鄭均桓 鄭大哲 鄭東泳 鄭東采
鄭文和 鄭範九 鄭柄國 丁世均
鄭義和 鄭長善 鄭鎭碩 鄭昌和
鄭哲基 鄭亨根 趙培淑 趙富英
趙誠俊 趙舜衡 曺雄奎 趙在煥
曺正茂 趙漢天 曺喜旭 朱鎭旺
千容宅 千正培 崔燉雄 崔明憲
崔炳國 崔秉烈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崔龍圭 崔在昇 秋美愛
河舜鳳 韓昇洙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雲那 許泰烈 玄敬大
玄勝一 洪思德 洪在馨 洪準杓
黃祐呂

○請暇議員(5人)

李源性 李漢東 林采正 鄭夢準
鄭宇澤

○出席政府委員

법무부차관	明	魯昇
행정자치부차관	趙	泳澤
농림부차관	安	鍾云
해양수산부차관	柳	正錫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李	基雨

【報告事項】

○議案提出

대한민국국군의대이라크파병반대결의안

(2월17일 안영근·김원웅·김홍신·김희선·박명환·배기운·송영길·이미경·이호웅·정범구·최용규 의원 발의)

2월18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심재철·조웅규·강창희·안상수·오세훈·이재오·고흥길·윤경식·권기술·박원홍·김형오 의원 발의)

2월19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심재철·조웅규·강창희·안상수·오세훈·이재오·고흥길·윤경식·권기술·박원홍·김형오 의원 발의)

2월19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심재철·조웅규·강창희·오세훈·이재오·고흥길·윤경식·권기술·박원홍·김형오·맹형규 의원 발의)

2월19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일본국의「戰時性的强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의제정촉구결의안

(2월18일 女性委員長 제출)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정병국·김진재·서병수·윤경식·심재권·이상득·정창화·이재오·고흥길·양정규·권기술·김동욱·김용학·조웅규·이윤성·안상수·박명환·이경재·장성원·김황식·오세훈·김원길·김근태·이강두·허태열·박창달 의원 발의)

2월19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정병국·정창화·이재오·고흥길·양정규·김진재·서병수·권기술·김동욱·김용학·조웅규·안상수·박명환·이경재·김원길·김황식·오세훈·김근태·윤경식·이상득·이강두·박창달·허태열 의원 발의)

2월19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2월18일 송석찬·김화중·이상수·김태홍·김경천·유재규·송영진·이윤수·심재권·박병석·정철기·최선영·박종우·김충조·김경재·김효석·조한천·김성순·김상현·박양수·전갑길·장성원·조배숙·조웅규·최용규·이창복 의원 발의)

2월20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

(2월19일 조웅규·김종하·서청원·서정화·신현태·이상득·임인배·안영근·홍사덕·박원홍·박명환 의원 발의)

2월20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자산운용업법안

(2월20일 정부 제출)

2월21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

(2월20일 정부 제출)

2월21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2월20일 김병호·김진재·서병수·안경률·박시균·김부겸·박종희·남경필·권철현·정문화·엄호성·김용학·오세훈·임인배·심재권·강창성·김태홍·서정화·박종웅·김무성·정병국·이강두·강신성일·권오을·정의화·김정숙·하순봉·정형근·안택수·이윤성·권태망·도종이·고흥길·정진석·강재섭·이원창 의원 발의)

2월21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代案)

(2월20일 法制司法委員長 제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2월21일 정부 제출)

2월22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월24일 이규택 의원 외 150인 서면동의)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월24일 엄호성·김문수·김부겸·김병호·박주천·이성헌·이인기·윤경식·정문화·정병국·정의화 의원 발의)

政務委員會에 회부하겠음

赦免法中改正法律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월24일 원희룡·안영근·서상섭·김부겸·김용학·오세훈·이부영·조정무·최연희·김영춘·이우재·김홍신·최병국 의원 발의)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겠음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박명환 의원 대표발의)

(2월24일 박명환·오세훈·김학송·김홍일·김광원·김동욱·김황식·윤한도·안경률·김용갑 의원 발의)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하겠음

국가재해·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

(2월25일 災害對策特別委員長 제출)

국무총리(고건)임명동의안

(2월25일 정부 제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2월25일 임인배·박원홍·이인기·고흥길·서병수·이원형·이원창·이완구·김윤식·권태망·이주영·권철현·남경필·이상득·최병렬·도종이·박창달·이승철·손희정·윤경식·김병호·전재희·이방호·강성구·허태열·조웅규·정갑윤·전용학·이병석·박혁규·윤두환·김용학·박종희·김정부·민봉기·윤여준·김황식 의원 발의)

대구지하철방화참사위문금갹출의건

(2월26일 의장 제의)

○議案審査

국무총리후보자(고건)인사청문요청안

(2월7일 대통령당선인 노무현 제출)

(2월24일 국무총리후보자(고건)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규택 의원 발의)

(2월4일 이규택 의원 외 150인 발의)

(2월20일 法制司法委員長 보고)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1월23일 맹형규·신현태·황승민·유흥수·전용학·하순봉·박희태·강창희·김학송·오세훈·정창화·신경식·최병렬·이승철·이재오·정병국·박창달·임인배·김영환·박세환·김문수·김운용·홍사덕·김용갑·김성호·유재건·엄호성 의원 발의)

(2월25일 行政自治委員長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2일 정부 제출)

(2월19일 法制司法委員長 보고)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10월25일 전갑길·박상규·김영진·장재식·원유철·김태홍·조성준·김충조·임종석·김경천·문희상·김희선·김옥두·김운용·이병석·권태망·김무성·민봉기·박종희·신경식·이주영·윤경식·정창화·김성조·김기배·이재창 의원 발의)

(2월25일 行政自治委員長 보고)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0월29일 이인기·김용학·강성구·이우재·원철희·최선영·허태열·정창화·김광원·양정규·박재욱·박희태·이원형·유재건·김효석·권오을·이상득·강인섭·엄호성·박시균·이재오·신영국 의원 발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10월2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25일 農林海洋水産委員長 보고)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

(10월29일 현승일·박창달·김성순·이미경·이원형·김경천·오장섭·김화중·황우여·고흥길·이재오·전용학·이승철·조정무·장재식·이규택·

전갑길·김문수·김명섭·김태홍·정동채·정세균·정동영·설훈 의원 발의)

(2월25일 敎育委員長 보고)

이상 5건 수정의결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2000년12월26일 김학원·김광원·김영구·김찬우·김태호·이인기·박헌기·윤경식·최병국·함승희·박승국·안영근·엄호성·윤두환·이원창·이주영 의원 외 25인 발의)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01년7월2일 최연희·김용균·윤경식·이주영·정인봉·최병국 의원 외 126인 발의)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4일 천정배·이상수·박종우·강운태·이미경·함승희·김민석·송영길·조배숙·조순형 의원 외 107인 발의)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6월24일 이주영·권기술·김기배·김문수·김용학·김홍신·남경필·맹형규·박재욱·박희태·안영근·안상수·안택수·오세훈·윤경식·강삼재·이윤성·정병국·정재문·최병국·허태열·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20일 法制司法委員長 보고)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請願提出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2월17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823 임성식 외 67인으로부터 李良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18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입법반대에관한청원

(2003년2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영수로부터 申鉉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18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입법반대에관한청원

(2003년2월20일 서울 마포구 도화2동 173 삼창빌딩 1461호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정명구 외 1889인으로부터 沈在哲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22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서대문형무소사적지보존관련법제정등에관한청원

(2003년2월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105-1604 정준영 외 65인으로부터 金元雄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22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향교재산법개정청원에대한반대청원

(2003년2월25일 제주시 삼도1동 506-14호 진용일로부터 玄敬大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請願審査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관한청원

(2000년9월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박종식으로부터 金泳鎭·朴燾太 의원 외 14인의 소개로 제출)

실뱀장어조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

(2000년11월30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116-22 조수룡 외 22인으로부터 金龍煥·李完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충남대호지구간척토지매각대금상환조건완화에관한청원

(2001년4월3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1리 238번지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식 외 2221인으로부터 文錫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부추곡수매시검사등급증인접착스티커부착에관한청원

(2001년5월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의12 권정오로부터 辛基南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2월25일 農林海洋水産委員長 보고)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計劃書提出

2003년도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2003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

(이상 2건 2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18일 財政經濟·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송부

쌀소득보전기금운용계획

(2월17일 정부 제출)

2월18일 農林海洋水産·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송부

○書面質問書提出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질문서

(2월10일 金樂冀 의원 제출)

2월14일 정부에 이송

로또복권,지방신문,국립순천대학교,주5일근무제등에

관한질문서(4건)

(2월19일 金景梓 의원 제출)

감사원의입장에관한질문서

(2월19일 金德培 의원 제출)

이상 5건 2월19일 정부에 이송

인천송도미사일기지이전에관한질문서

(2월21일 黃祐呂 의원 제출)

2월21일 정부에 이송

법무부산하시민자원봉사조직에관한질문서

(2월24일 李柱榮 의원 제출)

2월24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한국산업은행감사결과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2건)

(구)현대전자의1200억원해외자금불법유용사건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3건 2월15일 정부 제출)

임산부와어린이를구하기위한긴급대북식량지원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햇볕정책,한미관계,북핵문제,대북송금,주한미군철수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2월18일 정부 제출)

부산영도동삼동매립지활용방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2건)

(2월20일 정부 제출)

박지원대통령비서실장검찰조사결과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대북비밀송금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현대상선4000억원불법대출,각종정책제안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대북비밀송금,주한미군철수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북한군사력현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각종정책제안및현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입찰제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7건 2월21일 정부 제출)

농어촌교육특성화방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지방신문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2월22일 정부 제출)

한미관계,북핵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반한감정,주한미군철수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2월24일 정부 제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국립순천대학교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주5일근무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각종정책제안및현안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4건 2월25일 정부 제출)

(이상 2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2002년도국정감사결과처리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03년2월24일 감사원
2003년2월12일 국무총리실Ⅰ(국무조정실)
2003년2월12일 국무총리실Ⅱ(국무총리비서실)
2003년2월20일 재정경제부
2003년2월15일 통일부
2003년2월15일 외교통상부
2003년2월24일 법무부
2003년2월21일 국방부
2003년2월18일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2월14일 과학기술부
2003년2월7일 문화관광부
2003년2월20일 농림부
2003년2월15일 산업자원부
2003년2월17일 정보통신부
2003년2월18일 보건복지부
2003년2월4일 환경부
2003년2월15일 노동부
2003년2월18일 건설교통부
2003년2월12일 해양수산부
2003년2월4일 여성부
2003년2월21일 법제처
2003년2월14일 국정홍보처
2003년2월14일 국가보훈처
2003년2월18일 기획예산처
2003년2월15일 대통령비서실
2003년2월14일 대통령경호실
2003년2월12일 비상기획위원회
2003년2월17일 중앙인사위원회
2003년2월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03년2월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3년2월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년2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
2003년2월17일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년2월4일 금융감독위원회

이상 34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이상 34건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16대 대통령취임사】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벅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 여러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열강의 틈에 놓인 한반도에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년 동안 민족의 자존과 독자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반세기만에 세계 열두 번째의 경제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농경시대에서 산업화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합니다. 이라크 정세가 긴박합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뻗어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처럼 빈번해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 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러시아·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통우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를 함양하고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

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지역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웅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는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루어 내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동참합시다.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 무 현